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미 의원 발의]

의안번호	2714
------	------

발의일자 : 2025. 05. 29.

발 의 자 : 고성미 의원

찬 성 자 :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공유 촉진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금천구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유를 통한 경제·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나. 폐지된 조례 삭제 및 현행 조례 반영(안 제5조제5항).
- 다.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안 제6조 및 안 제8조).
- 라.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따른 표기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별도 첨부

2) 신 · 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2025. 5. 29. ~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유라 한다)란”을 ““공유”라 한다)”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유단체란”을 ““공유단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공유기업이란”을 ““공유기업”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5조의2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수 공유 참여자에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 촉진 우수자”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 또는 인증서 수여
2. 금천구청·금천구의회 소식지 및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

제6조의 제목 “(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를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심의·자문”을 “심의·의결 및 자문”으로, “설치할”을 “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유업무담당”을 “공유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금천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
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
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한다”를 “의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공유기업”을 “공유기업 등의 지정·취소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유 촉진정책”을 “공유촉진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공유 촉진”을 “공유촉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
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 중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및 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공유(共有)(이하 " <u>공유라 한다</u>)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1. ----- " <u>공유</u> "라 한다) ----- ----- ----- --.
2. " <u>공유단체</u> 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 <u>공유단체</u> "란 ----- ----- ----- ----- ----- ----- --.
3. " <u>공유기업</u>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3. " <u>공유기업</u> "이란 ----- ----- ----- ----- ----- ----- -----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생략)

<신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

-----.

4. (현행과 같음)

5.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5조의2에 따라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

"위원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
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금
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
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신 설>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 「서울특별시 금
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제5조의2(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
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 활
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
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
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우수 공유
참여자에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 촉진 우수자” 지정 표
지판 제작·교부 또는 인증서
수여

2. 금천구청·금천구의회 소식지
및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
스 등을 활용한 홍보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①

----- 심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구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의결 및 자문-----
----- 둘 -----
---.

② -----

----- 구성한다.

③ -----
----- 공유업무 담당 -----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금천구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나.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다.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

3. 공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
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
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
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
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
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인·중소기업 및 사회적기
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한다.

<신 설>

⑥ (생 략)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위원회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삭 제>

제7조(위원회의 기능) -----

의결한다.

1. ----- 공유기업 등의 지정.

에 관한 사항 2. <u>공유 촉진정책 수립과 평가</u> 에 관한 사항 3. <u>공유 촉진</u>을 위한 법규 및 제 도 개선에 관한 사항 <u><신 설></u> 4. (생 략) 제8조(회의) <u><신 설></u> ① (생 략) ② <u>위원회는 위원장 및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 는 경우 소집한다.</u> ③ (생 략) ④ <u>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 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⑤ · ⑥ (생 략)	<u>취소 및 ---</u> 2. <u>공유촉진 정책</u> ----- ----- 3. <u>공유촉진</u>----- ----- 4. <u>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 원 등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8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u>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u><삭 제></u>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 중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의결 및 자문에 참여하여서는 안 된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	---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 2014.10.10.] [(제정) 2014.10.10. 조례 제78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 관련 문제
 - 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 관련 문제
 - 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 관련 문제
 - 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 관련 문제
 - 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 관련 문제
 - 바.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금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금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구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유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2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

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이나 질병, 위원회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유 촉진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